

투자권유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법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및 금소법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 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융투자 상품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를 통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단,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적정성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3호]를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은 기준은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준용한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4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별지 제5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5. 관련법규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 물품 ·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절 설명의무

제13조(설명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 임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비율, 환해지 대상 통화, 주된 환해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해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해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해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5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분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 등급을 [별지 제6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8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임직원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각 호를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금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은 판매영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투자일임에 관한 사항은 일임업 인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재산 상황	1.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1) 10% 이하 2) 30% 이하 3) 50% 이하 4) 70% 이하 5) 7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2. 여유자금 보유여부 1) 3개월분 미만 2) 3개월분~6개월분 3) 6개월분~9개월분 4) 9개월분~12개월분 5) 12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확인
	3.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1)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2)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3)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4. 총 자산규모(순자산) 1) 5억 이하 2) 10억 이하 3) 30억 이하 4) 50억 이하 5) 50억 초과	
	5. 총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가능한 비율 1) 10%이하 2) 30%이하 3) 50%이하 4) 70%이하 5) 70%초과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

투자경험	<p>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p> <p>7.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2)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3)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4)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5)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
	<p>8.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없음 2) 1년 미만 3) 3년 미만 4) 5년 미만 5) 5년 이상 	
투자목적	<p>9.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10. 투자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 2)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5)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11.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2)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p>12. 금융지식 수준 및 이해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2)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3)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4) 과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p>13.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예정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미만 2) 1년 이상 ~ 3년 미만 3) 3년 이상 	현재 투자 자산에 대 한 투자 예정기간
연령	<p>14. 연령</p>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취약 투자자 여부	<p>15.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 <p>* 취약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p>	*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는 임직원이 판단하여 기입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고객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이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및 일임의 경우 체크 불가합니다.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당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제3호]

투자 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이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게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게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5.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6.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게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자필기재) 예시 : 적극투자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자필기재) 예시 : 1등급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위험도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지 제4호]

적합성 판단 기준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 하며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여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별지 제1호>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 1~13 항목(6,9 항목 제외)에 대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1)~5)의 번호가 각 항목별로 취득한 투자자의 점수가 되고, 각 점수를 총합한 후 기본점수 2점을 추가한 50점 만점(최저점수 13점)으로 계산.

투자자 점수	투자자 유형	비고
35점 초과	공격투자형	
35점 이하	적극투자형	
30점 이하	위험중립형	
25점 이하	안정추구형	
20점 이하	안정형	

2. 투자자 유형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 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5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① 고령투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②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③ 구조화·첨단화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의 보호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4조(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창구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④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강화된 판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로 부터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담당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한다.
3. 준법감시담당자의 사전 확인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상품의 개발·판매시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을 분석해야 한다.

1.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한다.
2. 제1호의 분석 과정에서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⑥ 고령투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혼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초고령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판매를 자제한다.

1.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급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력자와의 상담을 통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7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

금융상품 위험등급 분류 기준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표]

위험등급	분류기준	분류 내역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상품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초과인 집합투자기구) - 레버리지 등 특수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상품 - 실물관련 자산(중위험 자산 제외)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상품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상품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상품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상품 -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상품 - 저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 차익거래로만 운용되는 상품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로만 운용되는 상품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상품

[분류기준표 주석]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이므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투기등급의 채권,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 이란 BBB급 채권, A3급 전자단기사채 등,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 등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 이란 국공채, 지방채, A-급 이상 회사채, A2-이상의 전자단기사채 등,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핵심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상향될 수 있으며, 또한 해외채권 등은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 또는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 이상으로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0.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